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804
----------	-------

발의연월일 : 2026. 7. 7.

발 의 자 : 조인철 · 김우영 · 이정현
주철현 · 어기구 · 정준호
양부남 · 정일영 · 이개호
서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주식 등을 매도하거나 펀드 환매를 청구한 후 결제일까지의 시차 동안 해당 결제대금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매도대금 담보대출 제도가 제공되고 있음.

그러나 매도대금 담보대출 제도는 확정된 결제대금을 담보로 하여 사실상 무위험 대출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이 과도한 이자를 수취하고 있어 개인투자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현행법에는 이러한 대출 금리의 산정 근거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증권사가 이미 매도되었거나 환매가 청구된 증권의 결제대금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이자율 산정의 근거와 내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이자율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2항 신설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방법에”를 “방법과 제2항에 따른 공시에”로 한다.

-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중 이미 매도되었거나 환매가 청구된 증권의 결제대금 채권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이자율 산정의 근거 및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449조제1항에 제2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9의2.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공여 이자율 산정 근거 및 내역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

는 신용공여 약정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2조(신용공여) ① (생략)</p> <p><u><신설></u></p> <p>②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기준 및 <u>방법</u>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29. (생략)</p> <p><u><신설></u></p> <p>30. ~ 49.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72조(신용공여) ① (현행과 같음)</p> <p>② <u>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중 이미 매도되었거나 환매가 청구된 증권의 결제대금 채권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이자율 산정의 근거 및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u></p> <p>③ ----- -----<u>방법과 제2항에 따른 공시에</u>----- -----.</p> <p>제449조(과태료) ① ----- ----- ----- -----.</p> <p>1. ~ 29. (현행과 같음)</p> <p>29의2. <u>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u></p> <p>30. ~ 49.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